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문답식 요해 시리즈 (8)

본 자료는 작성일 현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기준서 본문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문답식으로 작성되었으며,
총 37개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기준서별로 본회에서 초안을 작성한 후 한국회계기준원의
감수를 거쳐 매월 연재할 계획이다. <편집자 註>

조사2팀 회계제도파트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연결재무제표와 별도재무제표

[적용범위 등]

1. 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과 기준서 제1027호 ‘연결재무제표와 별도재무제표’는 어떤 관계에 있습 니까?

기준서 제1027호는 지배기업과 그 기업이 지배하고 있
는 기업들로 구성된 연결실체의 연결재무제표 작성과 표시
에 적용합니다. 이때 사업결합에서 생기는 영업권을 포함한
사업결합에 관한 회계처리와 그 회계처리가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효과에 대하여는 기준서 제1102호 ‘사업결합’에서
규정(문단 1, 2)하고 있으므로 두 기준서는 상호 보완적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2. 별도재무제표란 무엇입니까?

별도재무제표는 연결재무제표에 추가하여 작성하고 표시

하는 재무제표입니다(문단 6). 별도재무제표는 지배기업,
관계기업의 투자자 또는 공동지배기업의 참여자가 투자자산
을 피투자자의 보고된 성과와 순자산에 근거하지 않고 직접
적인 지분투자에 근거한 회계처리로 표시한 재무제표입니다
(문단 4).

☞ 관련 법규에서 별도재무제표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거나 기
업이 별도재무제표를 제공하기로 결정한 경우에 종속기업, 공
동지배기업 및 관계기업 투자에 대한 회계처리에 제1027
호를 적용함(문단 3).

☞ 별도재무제표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질의 12참조.

[연결재무제표의 작성]

3. 지배기업임에도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 습니까?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지배기업은 제1027호에 따라
종속기업 투자를 연결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합니
다^{주1), 2)}. 그러나 지배기업이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
는 경우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문
단 10).

구 분	지배기업이 종속기업 투자를 연결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모두 충족)
(1)	다른 기업의 종속기업이면서 비지배지분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는 것에 반대하지 아니함(지배기업이 그 자체의 지분 전부를 소유하고 있는 다른 기업의 종속기업이거나, 지배기업이 그 자체의 지분 일부를 소유하고 있는 다른 기업의 종속기업이면서 그 지배기업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 지배기업의 다른 소유주들(의결권 없는 소유주 포함)에게 알리고 그 다른 소유주들이 그것을 반대하지 않는 경우).
(2)	상기 중간지배회사의 지분·채무상품 등이 공개시장에서 거래되지 아니함(지배기업의 채무상품 또는 지분상품이 공개된 시장(국내·외 증권거래소나 장외시장, 지역시장 포함)에서 거래되지 않는 경우).
(3)	지배기업이 공개된 시장에서 증권을 발행할 목적으로 증권감독기구나 그 밖의 감독기관에 재무제표를 제출한 적이 없으며 제출하는 과정에 있지도 않은 경우
(4)	지배기업의 최상위 지배기업이나 중간 지배기업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일반 목적으로 이용가능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한 경우

☞ 주1) 외감법시행령에 의하면 최상위 지배기업(상장 또는 금융기관인 중간지배기업 포함)만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였으나, 제1027호에 의하면 최상위 지배기업은 물론 중간지배기업 모두가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종속회사를 대상으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함.

☞ 주2) IFRS에는 지배력 기준에 (30%+ 최대주주기준)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지배기업이 2 이상인 경우가 발생할 수 없음.

[연결재무제표의 범위]

4. 벤처캐피탈, 뮤추얼펀드 등은 연결대상에서 제외되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연결재무제표는 지배기업의 모든 종속회사를 포함하여야 합니다(문단 12). 투자자가 벤처캐피탈, 뮤추얼펀드, 단위신탁 또는 이와 유사한 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종속기업을 연결대상에서 제외하지 않습니다(문단 16).

또한, 연결실체 내의 다른 기업들과 사업의 종류가 다르다는 이유로 종속기업을 연결대상에서 제외하지 않습니다(문단 17).

☞ 이러한 종속기업도 연결대상에 포함하고 연결재무제표에 그 종속기업의 다른 사업 활동에 대하여 추가하여 공시함으로써 관련된 정보를 제공함(문단 17).

5. 다른 회사를 '지배' 하는지 여부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합니까?

다른 회사를 '지배'하는지 여부는 지분율 기준^{주1)}과 실질 지배력 기준^{주1)}으로 판단합니다(문단 13). 아래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배력'이 있다고 봅니다.

구 분	내 용
(1) 지분율 기준	지배기업이 직접으로 또는 종속기업을 통하여 간접으로 기업 의결권의 과반수를 소유하는 경우(50%+1주 이상) ^{주2)}
(2) 실질지배력 기준	다음의 경우에는 지배기업이 다른 기업 의결권의 절반 또는 그 미만을 소유하더라도 지배한다고 봄. ① 다른 투자자와의 약정으로 과반수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경우 ② 법규나 약정에 따라 기업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경우 ③ 이사회나 이에 준하는 의사결정기구가 기업을 지배한다면, 그 이사회나 이에 준하는 의사결정기구 구성원의 과반수를 임명하거나 해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경우 ④ 이사회나 이에 준하는 의사결정기구가 기업을 지배한다면, 그 이사회나 이에 준하는 의사결정기구의 의사결정에서 과반수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경우

☞ 주1) 지분율기준과 실질지배력 기준은 기준서 제1027호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아님.

☞ 주2) 다만, 그러한 소유권이 지배력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는 제외함(문단 13).

6. A는 D에 대하여 40%의 의결권을 소유하며, B는 25%, C는 35%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때 A가 B로부터 D에 대해 추가적인 20%의 소유권을 얻을 수 있는 콜옵션을 매입하였습니다. 콜옵션의 행사에 별도의 제약은 없는 상황입니다. A는 D를 지배합니까?

A는 D를 지배합니다. 위 상황에서 콜옵션은 언제나 행사 가능하며 행사할 경우 A의 D에 대한 지분은 60%가 되어 D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주식매입권, 주식콜옵션, 보통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채무상품이나 지분상품, 또는 그 밖의 유사한 금융상품을 소유한 경우 이러한 금융상품은 행사되거나 전환될 경우 다른 기업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에 대한 기업의 의결권을 증가시키거나 다른 상대방의 의결권을 줄일 수 있는 잠재력(잠재적 의결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업이 다른 기업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평가할 때에는, 다른 기업이 보유한 잠재적 의결권을 포함하여 현재 행사할 수 있거나 전환할 수 있는 잠재적 의결권의 존재와 영향을 고려하여야 합니다(문단 14).

잠재적 의결권을 미래의 특정일이 되기 전까지 또는 미래의 특정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행사할 수 없거나 전환할 수 없는 경우라면 극 잠재적 의결권은 현재 행사할 수 있거나 전환할 수 있는 것이 아님(문단 14).

- ☞ 잠재적 의결권이 지배력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판단할 때 잠재적 의결권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사실과 상황을 검토해야 함(문단 15).
 - ▶ 잠재적 의결권의 행사조건과 그 밖의 계약상 약정내용을 개별적으로 또는 결합하여 검토
 - ▶ 그러한 권리의 행사나 전환에 대한 경영진의 의도와 재무능력은 고려하지 아니함.
- ☞ 잠재적 의결권이 있는 경우 당기순이익과 자본변동을 지배기업지분과 비지배지분에 배분할 때 현재 소유하고 있는 지분율에 기초하여 산정하며, 잠재적 의결권의 행사가능성이나 전환가능성은 반영하지 아니함(문단 19).
- ☞ 잠재적 의결권에 대해서는 'IAS 27, 28 및 31에 대한 실무적용지침 IG1~IG8 참조

[연결재무제표의 작성절차]

7. 연결재무제표는 어떤 절차에 따라 작성되니까?

연결재무제표는 지배기업과 종속기업 재무제표의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을 같은 항목별로 합산하여 작성^{주1)} 하되,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문단 18).

구 분	절 차
(1) 투자와 자본의 상계제거	지배기업의 각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의 장부금액과 각 종속기업의 자본 중 지배기업지분을 제거 ※ 영업권의 회계처리에 대하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사업결합을 참조
(2) 내부거래 등 상계 제거 ^{주2)}	연결실체 내의 거래, 이와 관련된 잔액, 수익과 비용은 모두 제거함
(3) 종속기업이익의 배분 ^{주3)}	보고기간의 연결대상 종속기업의 당기순이익 중 비지배지분을 식별함.
(4) 비지배지분순자산의 식별 ^{주4)}	연결대상 종속기업의 순자산 중 비지배지분은 지배기업의 소유지분의 순자산과 구분하여 별도로 식별함. 비지배지분순자산은 다음과 같이 구성됨.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사업결합에 따라 계산한 최초 사업결합 시점의 비지배지분 순자산에 해당하는 금액 ▶ 사업결합 이후 자본의 변동분 중 비지배지분에 해당하는 금액

- ☞ 주1) 유사한 상황에서 발생한 동일한 거래와 사건에 대하여 동일한 회계정책을 적용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함(문단 24, 25).
- ☞ 주2) 수익, 비용 및 배당을 포함하는 연결실체 내의 거래와 잔액은 모두 제거함. 재고자산이나 유형자산과 같이 자산에 인식되어 있는 연결실체의 내부거래에서 발생한 손익은 모두 제거함(문단 21).
- ☞ 주2) 연결실체 내의 거래에서 발생한 손익은 연결재무제표에 인식해야하는 자산손상의 징후일 수 있음(문단 21).
- ☞ 주2) 연결실체 내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손익의 제거로 인한 일시적차이에 대해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를 적용함(문단 21).
- ☞ 주3) 종속기업의 수익과 비용은 기준서 제1103호에서 정의하는 취득일부터 연결재무제표에 포함하며, 종속기업의 수익과 비용은 취득일에 지배기업의 연결재무제표에 인식된 자산과 부채의 가치에 기초함(문단 26).
- ☞ 주4) 비지배지분은 연결재무상태표에서 자본에 포함하되 지배기업의 소유주 지분과는 구분하여 표시함(문단 27).
- ☞ 주4) 당기순이익과 기타포괄손익의 각 구성요소를 지배기업의 소유주와 비지배지분에 귀속한 결과 비지배지분이 부(-)의 잔액이 되더라도 총포괄손익은 지배기업의 소

회계실무해설

유주와 비지배지분에 귀속시킴(문단 28).

- ☞ 주4) 종속기업이 자본으로 분류하는 누적적우선주를 발행하고 이를 비지배지분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지배기업은 배당결의 여부에 관계없이 이러한 주식의 배당금에 대하여 조정한 후 당기순손익에 대한 자신의 지분을 산정함(문단 29).

8.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보고기간종료일이 다른 경우는 어떻게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합니까?

연결재무제표는 원칙적으로 동일한 보고기간종료일에 작성된 지배기업의 재무제표와 종속기업의 재무제표를 사용하여 작성합니다(문단 22). 만일,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보고기간종료일이 다른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처리합니다(문단 22, 23).

구 분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보고기간종료일이 다른 경우
(1) 원칙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없지 않다면)종속기업은 지배기업의 재무제표와 동일한 보고기간종료일의 재무제표를 추가로 작성
(2) 예외	보고기간종료일이 다른 재무제표를 사용 ^{주1)} 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 다만, 지배기업 재무제표의 보고기간종료일과 종속기업 재무제표의 보고기간종료일 사이에 발생한 유의적인 거래나 사건의 영향을 반영함.

- ☞ 주1) 어떠한 경우라도 종속기업의 보고기간종료일과 지배기업의 보고기간종료일의 차이는 3개월을 초과해서는 안 되며, 보고기간의 길이 그리고 보고기간 종료일의 차이는 매 기간마다 동일하여야 함(문단 23).

9. 종속기업에 대한 지분율이 60%에서 80%로 증가되었습니다. 추가적인 영업권 등을 인식해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배력을 상실하지 않는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기업의 소유지분 변동은 자본거래(즉 소유주로서의 자격을 행하는 소유주와의 거래)로 회계처리합니다(문단 30). 이러한 상황에서 지배지분과 비지배지분의 장부금액은 종속기업에 대한 상대적 지분변동을 반영하여 조정합니다. 비지배지분의 조정금액과 지급하거나 수취한 대가의 공

정가치의 차이는 자본으로 직접 인식하고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시킵니다(문단 31).

- ☞ 지배기업이 지배력 상실 없이 기존 종속기업에 대한 지분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경우에는 영업권 또는 다른 자산이나 부채를 조정하지 않고 손익도 인식하지 아니함.

[지배력의 상실]

10.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한 경우 어떻게 처리합니까?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한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문단 34).

구 분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한 경우 처리
(1)	지배력을 상실한 날에 종속기업의 자산(영업권 포함)과 부채의 장부금액을 제거함
(2)	지배력을 상실한 날에 이전의 종속기업에 대한 비지배지분이 있다면 그 장부금액을 제거함(비지배지분에 귀속되는 기타포괄손익의 모든 구성요소를 포함).
(3)	아래 두 가지를 인식함 ① 지배력을 상실하게 한 거래, 사건 또는 상황에서 수취한 대가 ^가 있다면 그 공정가치 ② 지배력을 상실하게 한 거래에 소유주로서의 자격을 행하는 소유주에게 종속기업에 대한 지분을 분배하는 것이 포함될 경우, 그 분배
(4)	이전의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가 있다면 그 투자를 지배력을 상실한 날의 공정가치로 인식
(5)	종속기업과 관련하여 기타포괄손익에 인식한 금액 ^{주1)} 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거나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 규정이 있는 경우 직접 이익잉여금으로 대체
(6)	회계처리에 따른 모든 차이는 손익으로서 지배기업에 귀속하는 당기손익으로 인식

- ☞ 주1)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한 경우, 그 종속기업과 관련하여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모든 금액에 대하여 지배기업이 관련 자산이나 부채를 직접 처분한 경우의 회계처리와 동일한 기준으로 회계처리 함(문단 35).

예)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기타포괄손익⇒당기손익)
재평가잉여금(기타포괄손익⇒이익잉여금)

- ☞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하면서, 이전의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이 있는 경우나 이전의 종속기업으로부터 수취하거나 이전의 종속기업에게 지급할 금액이 있다면, 그 투자 자산과 금액은 지배력을 상실한 날부터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서에 따라 회계처리함(문단 36).

- ☞ 지배력을 상실한 날에 이전의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이 있는 경우 그 투자자산의 공정가치는 기업회계기준서 제 1039호 '금융상품 : 인식과 측정'에 따른 금융자산의 최초 인식시의 공정가치로 간주하거나, 적절한 경우 관계기업 또는 공동지배기업에 대한 투자의 최초 인식시의 원가로 간주 함(문단 37).

11. 종속기업의 처분으로 지배력을 상실할 때에만 처분 손익을 인식하도록 한다면, 지배력을 상실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배지분을 단계적으로 처분하여 조정금액과 수취한 대가의 공정가치 차이를 자본으로 인식하다가 마지막 단계에서 지배력을 상실하는 지분 처분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처분손익을 최소화하는 것도 가능합니까?

기준서 제1027호는 이익은 최대화하고 손실은 최소화하기 위하여 거래나 약정을 복수단계로 설계할 수 없도록 하는 지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문단 33, BC58~BC63). 복수의 약정을 단일 거래로 회계처리를 할 것인지를 결정할 때, 지배기업은 약정의 모든 조건과 상황 그리고 그 경제적 효과를 검토해야 합니다(문단 33).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상황은 지배기업이 복수 약정을 단일 거래로 회계처리해야 한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문단 33).

구 분	독수 약정을 단일 거래로 회계처리해야하는 상황
(1)	복수 약정을 동시에 체결하거나 서로를 고려하여 체결함.
(2)	복수 약정이 종합적응으로 상업적 효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설계된 단일 거래를 구성함.
(3)	하나의 약정의 체결은 적어도 다른 하나의 약정의 체결에 의존함.
(4)	하나의 약정이 그 자체로서는 경제적으로 정당화되지 못하지만 다른 약정과 함께 고려할 때 경제적으로 정당화됨 ^(*)

- ☞ 주) 주식의 일부를 시장가격보다 낮게 처분하고 후속적으로

시장가격보다 높게 처분하여 보상받는 경우 등

[별도재무제표에서 종속기업, 공동지배기업 및 관계기업 투자의 회계처리]

12. 별도재무제표 작성시 종속기업 등에 대한 투자자산은 어떤 금액으로 기록합니까?

별도재무제표 작성시, 종속기업, 공동지배기업 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은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하여 회계처리 합니다(문단 38).

구 분	별도재무제표에서의 종속기업 등에 대한 회계처리
(1)	원가법
(2)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 따른 방법(공정가치법)

- ☞ 투자자산의 각 범주별로 동일한 회계처리방법을 적용함(문단 38).
- ☞ 원가로 회계처리된 투자자산은 기준서 제1105호 '매각예정비 유동자산과 중단영업'에 따라 매각예정으로 분류(또는 매각 예정으로 분류되는 처분자산집단에 포함)되는 경우 기준서 제1105호에 따라 회계처리함. 기준서 제1039호에 따라 회계처리되는 투자의 측정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 변경되지 않음(문단 38).
- ☞ 연결재무제표에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 따라 회계처리하는 공동지배기업이나 관계기업 투자는 해당 투자자의 별도재무제표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회계처리함(문단 40).
- ☞ 지배기업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방식으로 신기업을 설립하여 연결실체의 구조를 재편성하고 별도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장부금액의 측정에 대하여는 문단 38B 및 38C 참조
- ☞ 국내의 경우 해외사례 및 국제회계기준 도입의 충실성 등을 고려하여, 국제회계기준에 의한 별도재무제표 방식으로 개별 재무제표를 작성토록 할 예정으로 2009년 하반기 외감법 시행령에 반영할 예정임(국제회계기준 전국 순회설명회 자료 중 '관련 법규 및 제도' - 금융감독원).

한편, 기업은 종속기업, 공동지배기업 또는 관계기업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그 배당금을 별도재무제표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문단 38A).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관계기업 투자

[목적과 적용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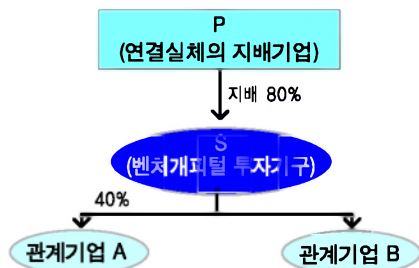
1. 제1028호의 목적과 적용범위는?

기준서 제1028호 '관계기업 투자'는 투자자가 당해 기업에 대하여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는 관계기업 투자지분에 대한 회계처리에 적용하기 위한 기준서로서, 관계기업 투자는 지분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 합니다. 그러나, 아래의 경우는 기준서 제1028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문단 1, 2).

구분	기준서 제1028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관계기업 투자(아래조건 모두 만족)
(1)	투자자가 다음의 기업 중 하나에 해당할 것 ① 벤처캐피탈 투자기구 ② 유추일련드, 단위신탁 및 이와 유사한 기업(투자와 연계된 보험펀드 포함)
(2)	상기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관계기업 투자를 다음 중 하나와 같이 처리하고 있을 것 ① 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 인식과 측정'에 따라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하여 회계처리 ② 단기매매증권으로 분류하여 회계처리

☞ 위와 같은 투자자산은 기준서 제1039호에 따라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공정가치의 변동은 변동이 발생한 회계기간의 당기손익으로 인식함(문단 1).

2. 아래 그림과 같은 지분구조에서 P는 연결재무제표에서 관계기업 A에 대해 어떤 평가방법을 적용합니까?



벤처캐피탈 투자기구인 S가 기준서 제1028호 문단1에 따라 관계기업 A에 대한 투자지분을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했을 것이므로, P는 연결재무제표에서 관계기업 A에 대한 투자지분을 IAS 39에 따라 공정가치로 인식하거나, 지분법을 적용하는 방법 중 하나를 회계정책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 이러한 회계정책은 관계기업별로 달리 선택할 수 있음. 즉, 일부 관계기업은 공정가치로 회계처리되고, 일부는 지분법으로 회계처리될 수 있음.
- ☞ 회계정책의 선택은 관계기업을 최초로 인식할 때 이루어져야 하고, 선택한 회계정책은 이후 회계기간에 일관성 있게 적용되어야 함.

2. '관계기업'이란 무엇입니까?

관계기업이란 투자자가 당해 기업에 대하여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는 기업을 말합니다. 이 경우 피투자기업의 형태는 고려하지 않으므로 관계기업의 범위에는 파트너십과 같이 법인격이 없는 실체도 포함됩니다(문단 2).

- ☞ '유의적인 영향력'에 대해서는 질의 3참조
- ☞ 관계기업은 종속기업이 아니며 조인트벤처 투자지분도 아님(문단 2).

[유의적인 영향력]

3. 피투자기업이 투자기업의 관계기업인지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피투자기업이 투자기업에 유의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로 판단합니다. 유의적인 영향력이란, 피투자자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며(문단 2), 다른 회사에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는지 여부는 지분율 기준^{주1)}과 실질 기준^{주2)}으로 판단합니다(문단 6,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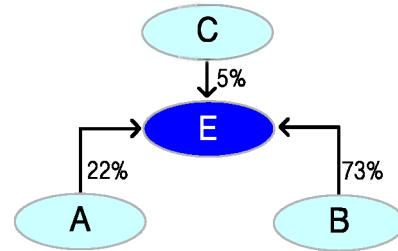
유의적인 영향력의 판단	
① 일반 원칙 : 지분율 기준	② 실질 기준
(직접 또는 간접으로) 피투자자에 대한 의결권의 20% 이상 소유 ^{주1)}	- 피투자자의 이사회나 이에 준하는 의사결정기구에 참여 - 배당이나 다른 분배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을 포함하여 정책결정과정 - 참여 - 투자자와 피투자자 사이의 중요한 거래 - 경영진의 상호 교류 - 필수적 기술정보의 제공

- ☞ 주1) 지분율이 20%를 넘더라도 유의적인 영향력이 없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제시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함(문단 6).
- ☞ 주2) 지분율이 20%에 미달하더라도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제시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함(문단 6).

또한, 다음과 같은 경우 유의적인 영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문단 10).

유의적인 영향력의 상실	
① 일반 원칙 : 의결권 20% 기준	② 실질 기준
절대적이거나 상대적인 소유 지분율의 변동에 따라 상실	(소유지분율 변동이 없더라도) - 관계기업이 정부, 법원, 관재인, 감독기관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경우에 중대한 영향력 상실 - 계약상 합의의 결과로 중대한 영향력 상실 등

4. 기업 E에 대한 주주들의 지분구조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주주인 기업 A가 기업 E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2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기업 E에 대한 또 다른 주주 기업 B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과반수를 초과하는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기업 E는 기업 A의 관계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기업 E는 기업 A의 관계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투자자(A) 외의 다른 투자자(B)가 해당 피투자자의 주식을 상당한 부분 또는 과반수 이상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여도 투자자(A)가 피투자자(E)에 대하여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배제할 필요는 없습니다(문단 6).

5. 투자자가 피투자자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20% 이상을 보유하고 있으며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이를 행사하지 않고 있습니다. 투자자는 피투자자의 관계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투자자는 피투자자의 관계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투자자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것만으로 피투자자는 관계기업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 ☞ 다만, 유의적인 영향력은 피투자자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이나, 정책에 관한 지배나 공동지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님(문단 2).

6. A는 D에 대하여 10%의 의결권을 소유하며, B는 50%, C는 40%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때 A가 B로부터 D에 대해 추가적인 20%의 소유권을 얻을 수 있는 콜옵션을 매입하였습니다. 콜옵션의 행사에 별도의 제약은 없는 상황입니다. A는 D에 대해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습니까?

회계실무해설

A는 D에 대해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습니다. 위 상황에서 콜옵션은 언제나 행사가능하며 행사할 경우 A의 D에 대한 지분은 30%가 되어 D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에 관한 의사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주식매입권, 주식콜옵션, 보통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채무상품이나 지분상품, 또는 그 밖의 유사한 금융상품을 소유한 경우 이러한 금융상품은 행사되거나 전환될 경우 다른 기업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에 대한 기업의 의결권을 증가시키거나 다른 상대방의 의결권을 줄일 수 있는 잠재력(잠재적 의결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업이 해당 피투자자에 대하여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는지 여부를 평가할 때에는, 다른 기업이 보유한 잠재적 의결권을 포함하여 현재 행사할 수 있거나 전환할 수 있는 잠재적 의결권의 존재와 영향을 고려하여야 합니다(문단 8).

- ☞ 잠재적 의결권을 미래의 특정일이 되기 전까지 또는 미래의 특정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행사할 수 없거나 전환할 수 없는 경우라면 극 잠재적 의결권은 현재 행사할 수 있거나 전환할 수 있는 것이 아님(문단 8).
- ☞ 잠재적 의결권이 유의적인 영향력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판단할 때 잠재적 의결권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사실과 상황을 검토해야 함(문단 9).
 - ▶ 잠재적 의결권의 행사조건과 그 밖의 계약상 약정내용을 개별적으로 또는 결합하여 검토
 - ▶ 그러한 권리의 행사나 전환에 대한 경영진의 의도와 재무능력은 고려하지 아니함.
- ☞ 잠재적 의결권이 있는 경우 피투자자의 당기순손익과 자본변동 중 투자자의 지분은 현재 소유하고 있는 지분율에 기초하여 산정하며 잠재적 의결권의 행사 가능성이나 전환가능성은 반영하지 아니함(문단 12).
- ☞ 잠재적 의결권에 대해서는 실무적용지침 사례 1~5 참조
- ☞ 지배, 공동지배, 유의적인 영향력에 대한 현행 기준서 및 제 1028호 규정 비교

구 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28호	기업회계기준서 제15호
(1) 지배	연결	지분법
(2) 공동지배	비례연결/지분법	상동
(3) 유의적인 영향력	지분법	상동

구 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28호	기업회계기준서 제15호
기 타	연결채무제표가 주채무제표이므로 유의적인 영향력에 지배와 공동지배를 포함하지 않음	개별채무제표가 주채무제표이므로 지배회사의 개별채무제표에 관계기업은 물론 종속기업에 대한 투지도 지분법으로 평가하며, 종속기업 투자에 대한 평가규정이 별도로 존재

[지분법]

7. 관계기업에 투자하고 있는 경우에도 지분법 회계처리를 수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관계기업에 투자하고 있는 경우에도 지분법 회계처리를 수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문단 13).

구분	관계기업에 투자하고 있는데도 지분법을 수행하지 않는 경우
(1)	투자자산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에 따라 매각예정으로 분류되는 경우 ^{주)}
(2)	관계기업 투자를 가지고 있는 지배기업으로서 기준서 제1027호 문단10의 예외조항에 따라 연결채무제표 작성이 면제되는 경우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투자자가 그 자체의 지분 전부를 소유하고 있는 다른 기업의 종속기업이거나, 투자자가 그 자체의 지분 일부를 소유하고 있는 다른 기업의 종속기업이면서 그 투자자가 지분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 투자자의 다른 소유주들(의결권이 없는 소유주 포함)에게 알리고 그 다른 소유주들이 그것을 반대하지 않는 경우
(3)	• 투자자의 채무상품 또는 지분상품이 공개된 시장(국내외 증권거래소나 장외시장, 지역시장 포함)에서 거래되지 않는 경우 • 투자자가 공개된 시장에서 증권을 발행할 목적으로 증권감독기구나 그 밖의 감독기관에 재무제표를 제출한 적이 없으며 현재 제출하는 과정에 있지도 않은 경우 • 투자자의 최상위 지배기업이나 중간 지배기업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일반 목적으로 이용가능한 연결채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 ☞ 주) 동 투자자산은 기준서 제1105호에 따라 회계처리하되,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관계기업투자가 더 이상 그 분류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면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그 시점부터 지분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함.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시

점 이후 기간의 재무제표는 이에 따라 수정되어야 함(문단 14, 15).

8. 지분법은 어떤 방식으로 회계처리 합니까?

지분법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회계처리^{주1)} 합니다(문단 11, 20~23, 26, 27, 28).

구 분	회계처리 방법
취득시	최초 취득시에는 취득원가로 인식
	취득원가와 관계기업의 식별가능한 자산, 부채 및 우발부채의 순공정가치 중 투자자의 지분 해당액(이하 '해당액')과의 차액에 대한 처리 ① 취득원가 > '해당액' : 차액을 영업권 ^{주2)} 으로 인식 ② 취득원가 < '해당액' : 차액을 당기손익 ^{주3)} 으로 인식
취득일 이후	순자산 변동
	취득일 이후 발생한 피투자자의 당기순이익 중 투자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장부금액에 가감함. ① 피투자자의 손익 : 투자자의 지분상당액을 투자자의 손익으로 인식 ② 피투자자에게서 받은 분배액 : 투자자산의 장부금액에서 차감함 ③ 피투자자의 순자산변동이 손익이 아닌 자본의 증감에서 발생 - 투자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투자자산의 장부금액에 반영하고 투자자의 기타포괄손익에 반영(예: 유형자산의 재평가, 외화환산손익 등)
	내부거래 제거
	기타 1
	기타 2

☞ 지분법 적용절차의 많은 부분이 기준서 제1027호에서 규정한 연결절차와 유사함. 특히 종속기업을 취득할 때 사용한 회계처리절차의 기본 개념은 관계기업 투자의 취득시 회계처리에 도 적용됨(문단 20, 기준서 제1027호 문단 18~31 참조).

☞ 주1) 유사한 상황에서 발생한 동일한 거래와 사건에 대하여 동일한 회계정책을 적용하여 투자자의 재무제표를 작성

함(문단 26, 27).

- ☞ 주2) 영업권은 투자자산의 장부가액에 포함하되, 영업권의 상각은 허용하지 아니하므로 관계기업의 손익에 대한 투자자의 지분상당액 결정에 포함하지 않음(문단 23). 한편, 현행의 기준서는 일괄법을 사용하여 투자차액(영업권)을 산정하나, 기준서 제1028호에서는 종속기업을 단계적으로 취득할 때 사용한 회계처리 절차의 기본 개념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 단계법을 사용해야 함.
- ☞ 주3) 동 차액은 투자자산의 장부가액에서 제외되며, 투자자산을 취득한 회계기간의 관계기업 손익 중 투자자의 지분상당액을 결정할 때 수익에 포함함(문단 23).
- ☞ 관계기업이 자본으로 분류하는 누적적 우선주를 발행하였고 이를 다른 투자자가 소유하고 있는 경우, 투자자는 배당결의 여부에 관계없이 이러한 주식의 배당금에 대하여 조정한 후 당기순손익에 대한 자신의 지분을 산정함(문단 28).
- ☞ 관계기업에 대한 연결실체의 지분은 연결실체 내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지분을 단순 합산한 것임. 연결실체의 다른 관계기업이나 조인트벤처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관계기업의 지분은 합산하지 아니함(문단 21).

9. 투자자와 관계기업의 보고기간종료일이 다른 경우는 어떻게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합니까?

투자자는 지분법을 적용할 때 가장 최근의 이용 가능한 관계기업 재무제표를 사용합니다(문단 24). 만일,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보고기간종료일이 다른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처리합니다(문단 24, 25).

구 분	투자기업과 관계기업의 보고기간종료일이 다른 경우
(1) 원칙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없지 않다면) 투자기업은 투자기업의 재무제표와 동일한 보고기간종료일의 관계기업 재무제표를 추가로 작성
(2) 예외	보고기간종료일이 다른 재무제표를 사용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 다만, 투자기업 재무제표의 보고기간종료일과 관계기업 재무제표의 보고기간종료일 사이에 발생한 유의적인 거래나 사건의 영향을 반영함.

☞ 어떠한 경우라도 투자기업의 보고기간종료일과 관계기업의 보고기간종료일의 차이는 3개월을 초과해서는 안되며, 보고기간의 길이 그리고 보고기간 종료일의 차이는 매 기간마다 동일하여야 함(문단 23).

10. 관계기업의 손실 중 투자자의 지분상당액으로 인식할 수 있는 한도는 투자자산의 장부금액까지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관계기업의 손실 중 투자자의 지분이 관계기업 투자지분과 같거나 초과하는 경우 투자자는 관계기업 투자지분 이상의 손실에 대하여 인식을 중지하는 바, 이때 관계기업 투자지분은 지분법이 적용되는 투자자산의 장부금액은 물론 실질적으로 투자자의 순투자의 일부를 구성하는 장기투자지분 항목을 합한 금액입니다(문단 29).

- ☞ 예측 가능한 미래에 상환 받을 계획도 없고 상환가능성도 높지 않은 항목은 실질적으로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의 연장으로 보는 것임(문단 29). 그러한 예로는 우선주와 장기수취채권이나 장기대여금이 포함됨(문단 29).
- ☞ 그러나 매출채권, 매입채무 또는 담보부대여금과 같이 적절한 담보가 있는 장기수취채권은 제외함(문단 29).
- ☞ 지분법 적용으로 관계기업 보통주에 대한 투자자산 금액을 초과한 손실은 관계기업 투자지분 중 보통주와 다른 구성항목이 있을 경우 관계기업이 청산된다면 상환 받는 우선순위를 반대의 순서로 적용함(문단 29).

향후 관계기업이 이익을 보고할 경우 투자자는 투자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이익의 인식을 재개하되, 인식하지 못한 손실을 초과한 금액만을 이익으로 인식합니다(문단 30).

- ☞ 투자자의 지분이 '0'으로 감소된 이후 추가 손실분에 대하여 투자자는 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가 있거나 관계기업을 대신하여 지불하여야 하는 경우, 금액까지만 손실과 부채로 인식함(문단 30).

11. 관계기업의 손실 인식을 포함하여 지분법을 적용한 이후에도 관계기업에 대한 순투자자산에 대하여 추가적인 손상차손을 인식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이 경우 기준서 제1039호의 요구사항을 적용해야 합니다(문단 31). 또는 투자자는 관계기업에 대한

순투자자산에 속하지 않는 그 밖의 투자지분에 대하여 기준서 제1039호의 요구사항을 적용하여 추가적인 손상차손을 인식할 것인지 여부와 손상금액을 결정해야 합니다(문단 32). 한편, 손상차손의 모든 환입은 기준서 제1036호에 따라 투자자산의 회수가능액이 후속적으로 증가하는 만큼 인식합니다(문단 33).

- ☞ 관계기업 투자의 장부금액을 구성하는 영업권은 분리하여 인식하지 않으므로 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의 영업권 손상검사에 관한 요구사항을 적용한 별도의 손상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함(문단 33).
- ☞ 그 대신 투자자산의 전체 장부금액을 대상으로 기준서 제1039호의 요구사항을 적용한 결과로 투자자산이 손상될 수 있는 징후가 나타날 때마다 기준서 제1036호에 따라 단일 자산으로서 회수가능액(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과 비교하여 손상검사를 실시함(문단 33).

* 사용가치 = 다음 중 하나(적절한 가정에 따라 경우 두 방법의 결과는 동일)

구 분	사용가치의 결정
(1)	관계기업이 영업 등을 통하여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추정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 중 투자자의 지분과 해당 투자자산의 최종 처분 금액의 현재가치
(2)	투자자산에서 배당으로 기대되는 추정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와 해당 투자자산의 최종 처분금액의 현재가치

- ☞ 위 상황에서 인식된 손상차손은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의 장부금액의 일부를 구성하는 어떠한 자산(영업권 포함)에도 배분하지 않음(문단 33).
- ☞ 관계기업 투자의 회수가능액은 각 관계기업별로 평가함. 다만, 관계기업이 창출하는 현금유입이 그 기업의 다른 자산에서 창출되는 현금흐름과 거의 독립적으로 구별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문단 34).

[유의한 영향력의 상실]

12. 투자기업이 관계기업에 대하여 유의적인 영향력을 상실하는 경우 어떻게 회계처리 해야 합니까?

지분법을 적용하던 회계처리를 중단하고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문단 18, 19, 19A).

유의적인 영향력을 상실한 경우의 투자지분의 처리	
종속기업이 된 경우	제1103호 '사업결합' 및 제1027호 '연결재무제표와 별도 재무제표' 적용
조인트벤처가 된 경우	제1031호 '조인트벤처 투자지분' 적용
그 외의 경우 ^{주)}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에 따라 회계처리
	① 유의적인 영향력을 상실한 때에 이전 관계기업에 대하여 투자자가 계속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함.
	② 다음의 차이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함. 가.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원의 공정가치 + 관계기업 투자지분 매각대가의 공정가치 나. 유의적인 영향력을 상실한 시점의 투자자원의 장부금액 ※ 위 산식 상 이전 관계기업 투자지분 중 얼마를 매각하였는지에 관계없이 동일한 금액이 당기손익으로 인식될 것임
	③ 관계기업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하게 된 시점의 해당 투자자원의 장부금액을 제1039호에 따른 금융자산의 최초 측정시의 원가로 간주함.

주) 유의한 영향력을 상실한 날에 이전 관계기업과 관련하여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금액을 이전 관계기업이 관련 자산 혹은 부채를 직접 처분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회계처리 함. 따라서 관계기업이 과거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손익을 해당 기타포괄손익과 관련된 자산 또는 부채를 처분할 때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함(문단 19A).

주)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의 소유지분이 감소하지만 투자자가 관계기업의 정의를 충족할 경우, 투자자는 이전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손익 중 비례적 금액만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함(문단 19A). 

시 사 경 제 용 이

발틱운임지수 [BDI : Baltic Dry Index]

대표적인 경기·주가 선행지수로 꼽히는 **발틱운임지수(BDI)**가 지난주 재차 4000선을 회복했다. 하지만 추가적으로 상승행진을 이어가기엔 부담이 크다는 평가다. 전문가들은 최근 BDI의 강세는 철광석을 비롯한 중국의 원자재 매입 효과와 함께 중국과 호주 등 수출입 국가의 항만적체^에 따른 것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해운운임 상승이 선박공급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추가적으로 상승행진을 이어가긴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2009. 6. 22, 이데일리)

Baltic Dry Index(BDI)는 발틱해운거래소가 종전 건화물시황 운임지수로 사용해 온 Baltic Freight Index(BFI)를 대체한 종합운임지수로서 1999년 11월 1일부터 발표하고 있습니다. 동 지수는 선형별로 대표항로를 선정하고 각 항로별 톤마일 비중^에 따라 가중치를 적용하여 1985년 1월 4일을 기준(1985. 1. 4.=1,000)으로 산정하며 선형에 따라 Baltic Capesize Index(BCI), Baltic Panamax Index(BPI), Baltic Handy Index(BHI) 등 별도의 선형별 지수로 구성되어 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해운업계에서 세계 물류 운송량이 얼마나 되는지 지수화 해놓은 것으로 보통 해운시황의 지표로서 활용된다.